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허1889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보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22. 1. 28. 2021당9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1. 3.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949호로 '아래 나.항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2. 1. 28.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2, 3은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더라도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판단의 대상이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4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광고대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0. 3. 9./ 2020. 5. 11./ 제30-1058536호

- 3) 디자인권자: 피고
-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2014. 9. 1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4-0111451호에 게재된 '라이팅 판넬용 광고 이미지판 고정프레임 구조체'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원고가 2020. 1. 10. E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한 광고대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3) 선행디자인 3

원고는 2020년 1월경 E 주식회사와 광역전철역에 투척용 소화기를 이용한 광고매체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2. 1.부터 2025. 1. 31.까지 광고대행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2020. 2. 29.부터 화정역 등에 설치한 광고대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2017. 12. 6.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7-0133731호에 게재된 '다양한 색상 배경을 갖는 광고패널'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라]와 같다.

[인정근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 1, 3, 4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3, 4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파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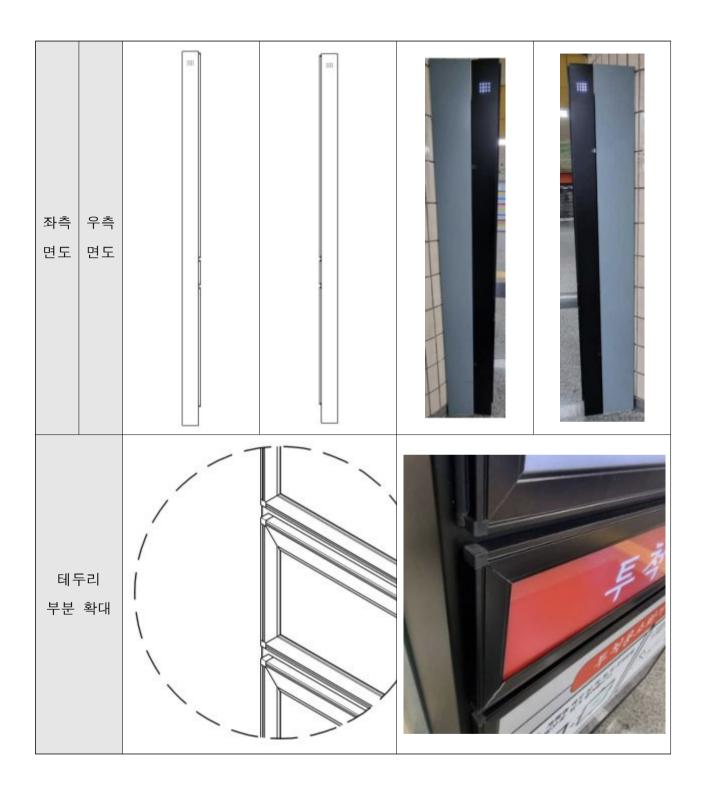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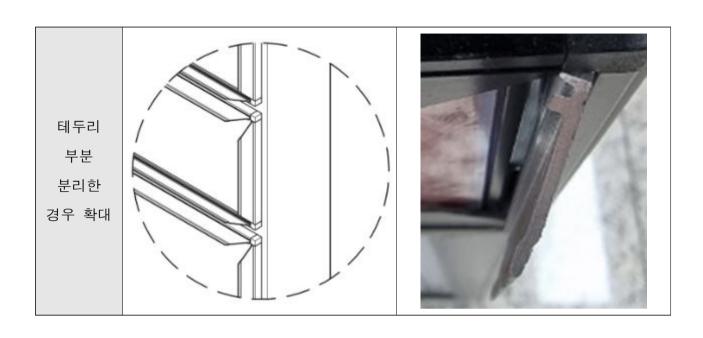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동일 · 유사 여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대상 물품의 동일 · 유사 여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대상 물품은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광고판을 위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고대'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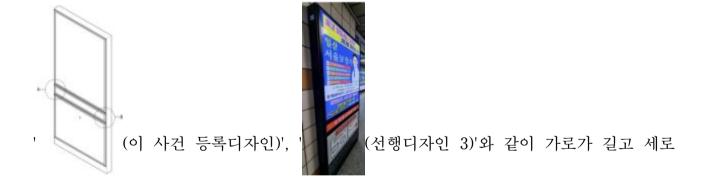
-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공통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을 대비하여 보면, ① 전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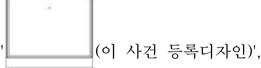
가 좁으면서 높이가 긴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전면에는 광고판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액자 형상

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테두리1)가 상하 방향으로 3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 배치 된 세로 테두리는 길게, 가운데에 배치된 세로 테두리는 짧게 형성되어 각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르고,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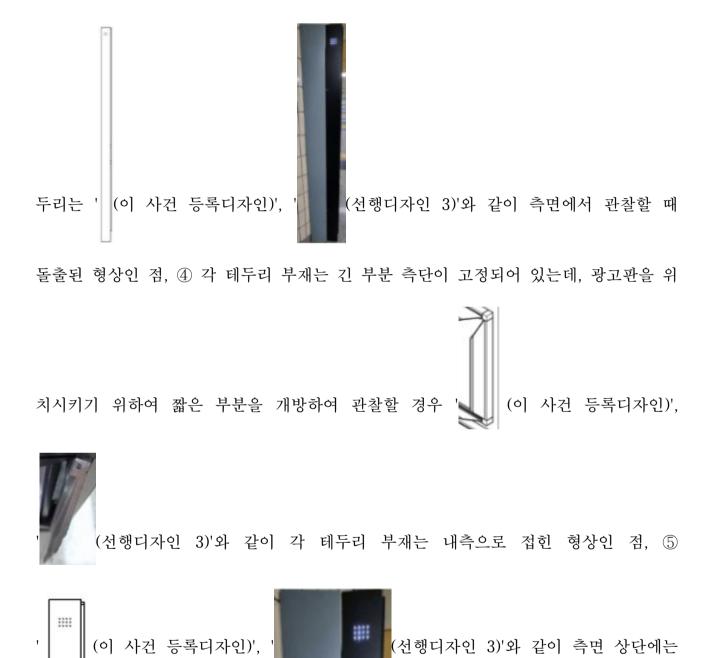
디자인 3)'와 같이 아래에 배치된 테두리는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공간 위에 형성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와 같이 테두리의 각 모서리에는 직육면체 형상의 기둥2)이 형성되어 있고, 테두리의 상하좌우측 변에는 내측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의 테두리 부재3)가 형성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구성된 테

¹⁾ 원고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테두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테두리'라 한다.

²⁾ 원고는 '블록'이라고 부른다.

³⁾ 원고는 '덮개판'이라고 부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의 설명에는 '테두리 부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테두리 부 재'라 하다.



열 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행디자인 3의 테두리는 '의 '와 같이 형성되어 위에 배치된 직사각형 모양의 가

로와 세로의 비율이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세로(측면에서 관찰

할 경우 가로)가 상대적으로 좁은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3은 ' 와 같이 세로가

상대적으로 넓은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검토 결과 정리

양 디자인은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한편 양 디자인은 위 ᄀ, Ը과 같이 정면에서 관찰할 경우 3개의 액자의 비율, 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와 세로의 비율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 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양 디자인에서 세로 부분(측면에서 관찰할 경우 가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어 차이점 ①이 광고대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특징에 영 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 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광고대 는 설치된 후 전면에 광고판을 위치시키고 위와 같이 광고대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전면 부분에 비하여 측면 부분은 인식하기 어려워 차이점 ①은 당해 물품에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차이점 ①. ①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 점 ᄀ. Ը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 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위와 같 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디자인으로부터 전체적 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

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3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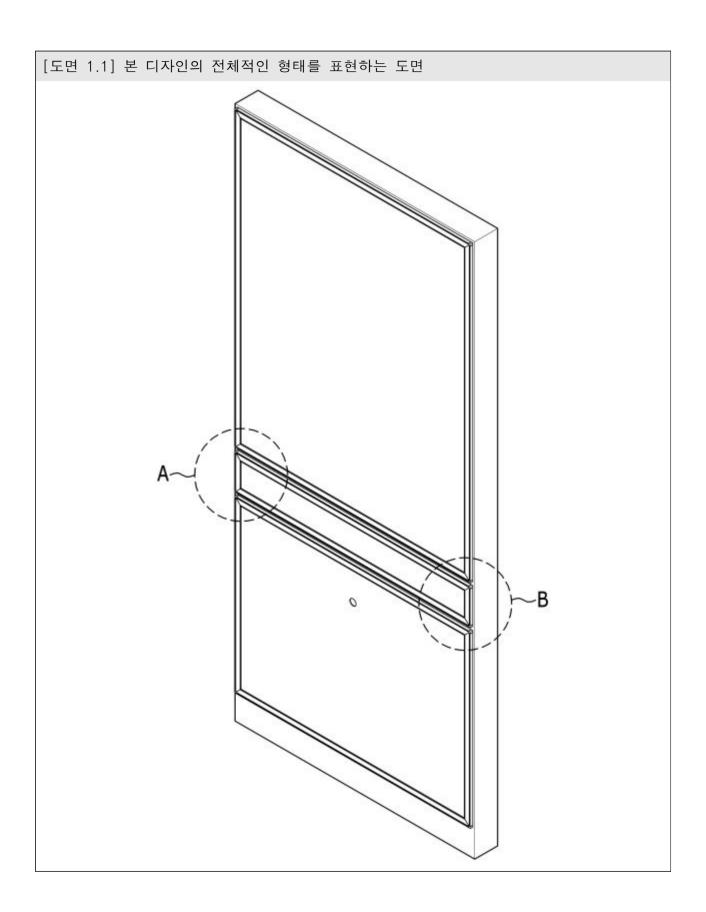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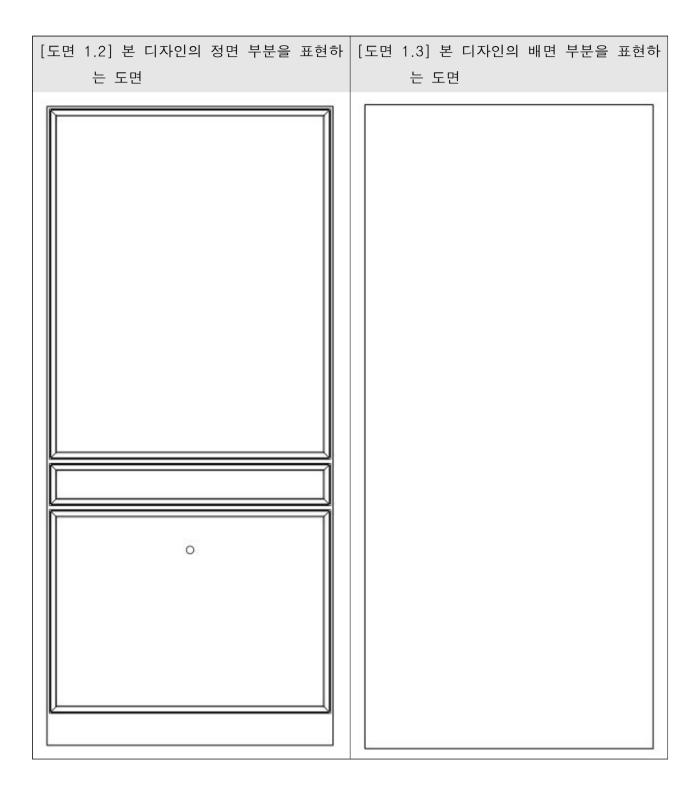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 1. 본 디자인의 재질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재 및 합성수지재이다.
- 2. 본 디자인은 광고판들을 각각 액자 형태로 위치시킬 수 있고 액자 형태를 형성하는 테두리 부재들을 기울어지도록 하여 광고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대에 관 한 것이다.
-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5는 본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8은 도면 1.1의 A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1의 B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다.
- 4. 참고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광고판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1.2는 참고도면 1.1의 C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며, 참고도면 1.3은 참고도면 1.1의 D 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도면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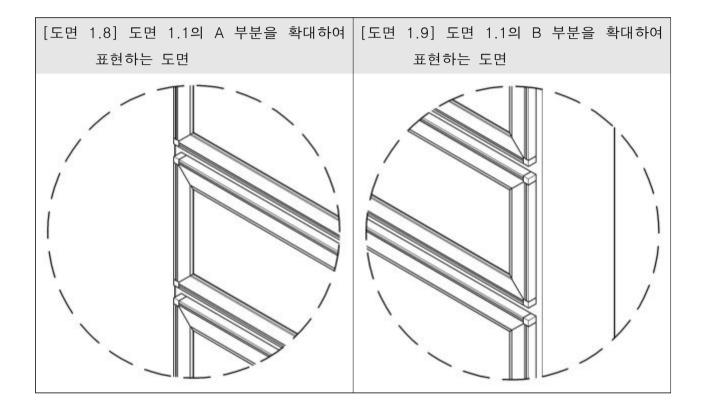
광고대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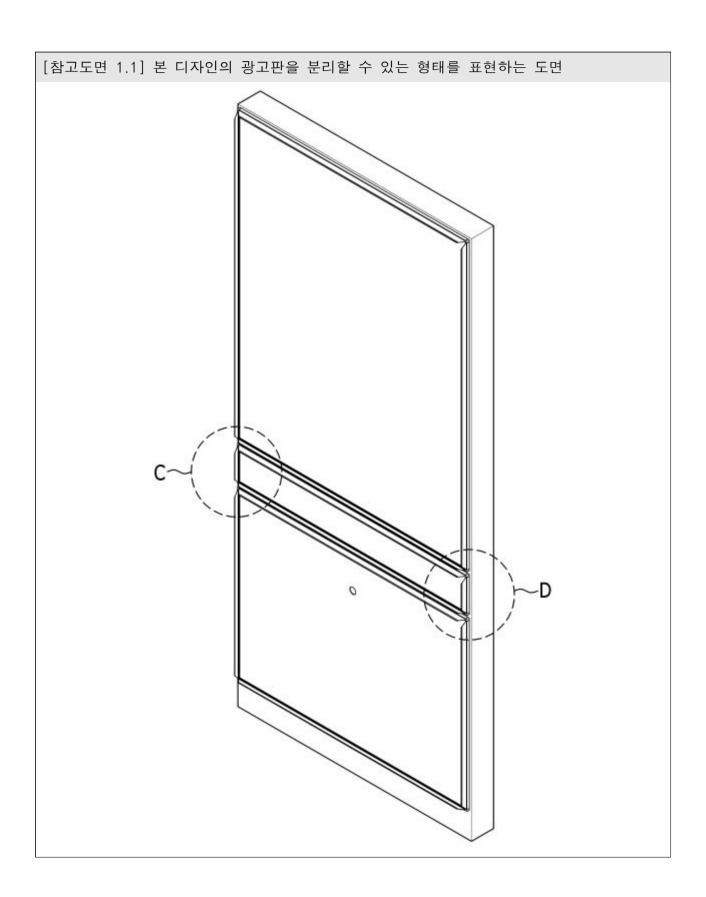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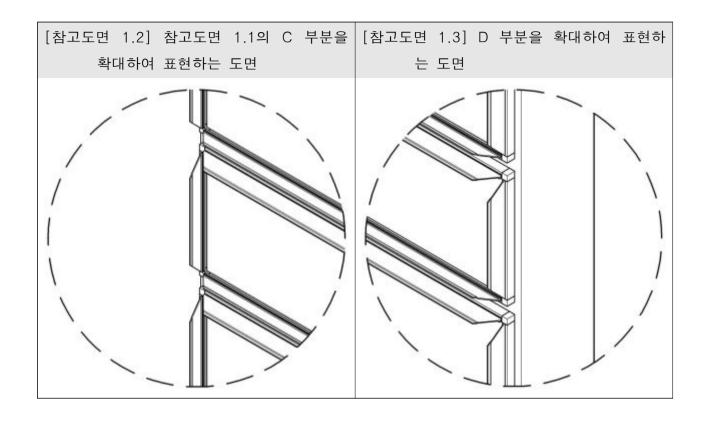


[도면 1.4] 본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	
하는 도면	하는 도면
하는 도면 ::::::	하는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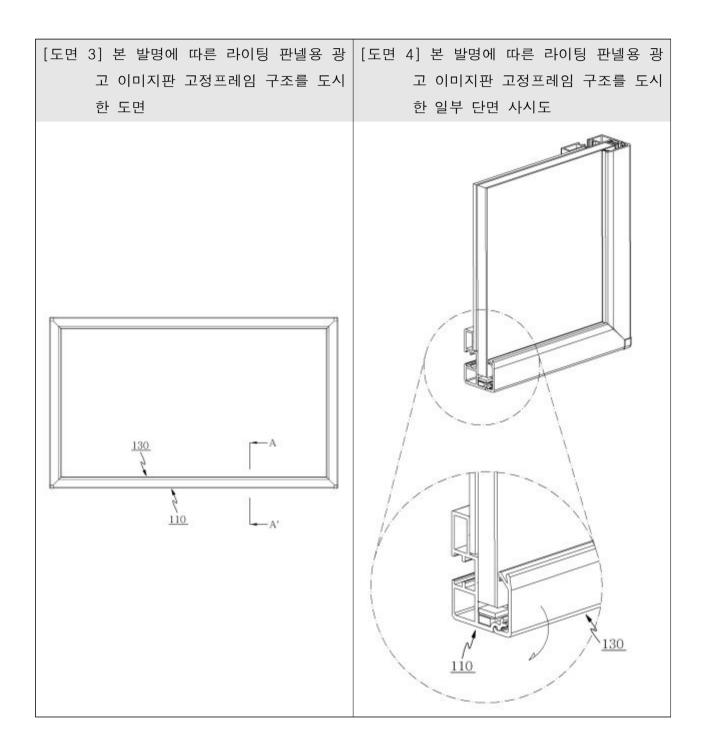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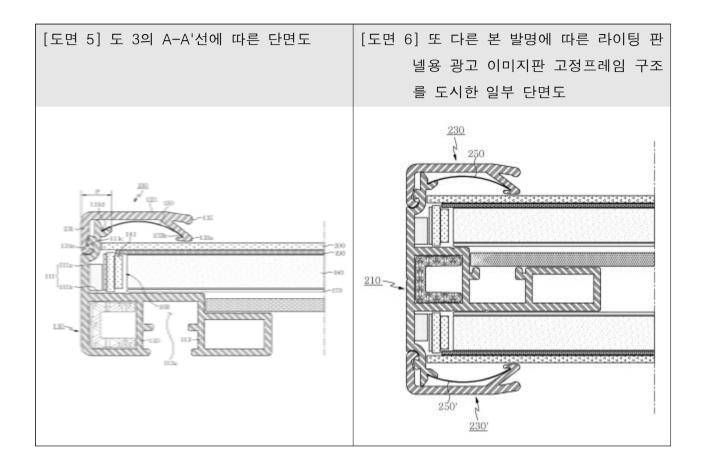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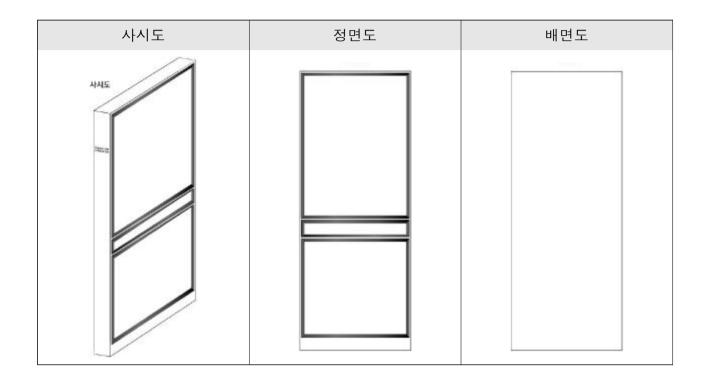


[별지 2의 가]





[별지 2의 나]



좌측면도	우측면도
	0000000 Walter and

위면도	아래면도

[별지 2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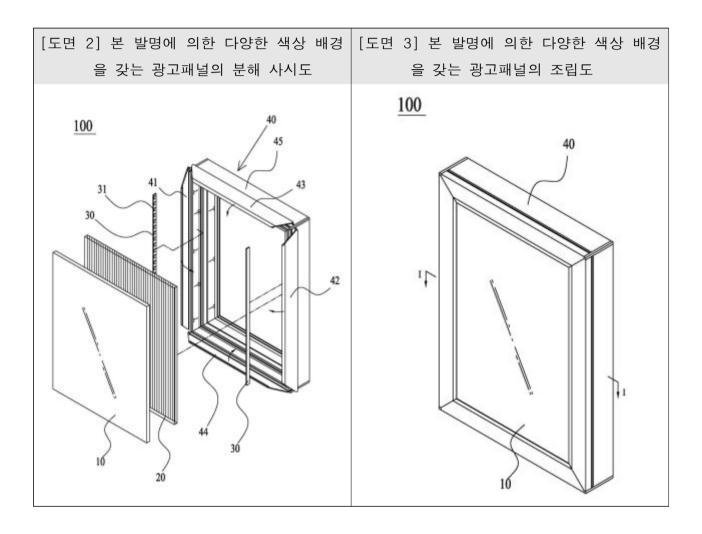








[별지 2의 라]



 [도면 4a] 본 발명에 의한 다양한 색상 배경
 [도면 4b] 본 발명에 의한 다양한 색상 배경

 을 갖는 광고패널의 전면 프레임의
 을 갖는 광고패널의 전면 프레임의

 열고 단힘을 나타내는 단면도
 열고 단힘을 나타내는 단면도